

의안번호	제 316 호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11 월 23 일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 월 23 일

발 의 자 : 박한범, 박봉순,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최병운
윤은희

1. 제정이유

-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바,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충북 도내 입양아동 현황 : 26명('12), 24명('13), 26명('14)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입양가정 지원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나.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다. 입양축하금으로 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 라.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 (안 제6조)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 마. 입양축하금은 개인생활 보호차원에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토록 규정 (안 제8조)
- 바. 입양관련 기관,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규정 (안 제13조)
- 사.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20호

라. 협의: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협의

마. 비용추계: 붙임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신청 안내) 도지사는 입양가정 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

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양친	성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입양 아동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입양일	년 월 일	현재 장애상태

입양 축하금	신청 금액	원	지급 내역
-----------	----------	---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수수료
	2.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		

관계법령 발췌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3. 관련조문

- 제5조(입양축하금), 제6조(지원대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나. 추계의 전제: 입양축하금(27,000천원)

○ 입양축하금: 27,000,000원

- 비장애아동 입양: 1,000,000원 × 23명 = 23,000,000원

- 장애아동 입양: 2,000,000원 × 2명 = 4,000,000원

다. 추계결과: '16년~'20년까지 총135,000천원(연 27,000천원) 정도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충북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도비보조율에 의거 차등보조

마. 지원계획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입양축하금	25	25	25	25	2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입양축하금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주1) 상기 비용추계는 조례안의 부칙사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0년까지 5년간을 추계 기간으로 함

주2) 지원내역별 근거

- 입양축하금 : 최근 3년간 총북도내 평균 입양아동수 25명(장애 2, 비장애 23)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